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3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 참고자료	11
1. 식품위생교육 제도	11
2. 식품위생교육 기관 현황	12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13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9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1조제8항),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교육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41조제9항),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호의4).

현행	개정안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신설></u>	<u>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u>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실시 기관</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 2. ~ 4. (생략)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3.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u> ⑩ -----<u>교육의 내용,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교육비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 지정취소의 방법 및 절차</u>-----. 제81조(청문)-----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41조제9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u> 2. ~ 4.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1조¹⁾에서는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고,

제36조제1항³⁾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⁴⁾에서는 식품위생교육을 실

-
- 1)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5)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6)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식품위생교육대상자와 10개의 위생교육기관을 정하고 있고, 식약처 예규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⁷⁾을 두고 있음.

< 식품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 >

교육기관명		교육대상(총 21개)	교육기관 지정년도
동업자조합	①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판매업 등 16개 업종	1987년
	②대한제과협회	제과점	1993년
	③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1987년
	④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업	1993년
	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업	1993년
	⑥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1993년
	⑦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2011년
	⑧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2011년
	⑨한국떡류식품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2011년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⑩한국외식산업협회	일반음식점 등 3개 업종(회원에 한함)	2014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5) 「식품위생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6) 「식품위생법」 제64조(설립)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7)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그런데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그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바, 어떠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알 수가 없고,⁸⁾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닌 ‘지정취소’는 그 요건과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이 법률에 마련되면,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을 도모하고 식품위생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한 취지로 현행법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도 도축업 등의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8)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이 없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개 동업자조합은 식약처고시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따라 교육계획 및 예산 서류 등을 심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취소 요건은 부재한 실정임. 또한 식약처장이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 한국외식산업협회의 경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기준지침」에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서에 불과함.

< 유사 입법례 >

「식품위생법」(2020. 12. 29. 신설)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시기·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8조의4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③ (생략)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위반하여 교육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
· 시기 ·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주체에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있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경우 교육 실시 기관의 지정 주체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일원화되어 있고,⁹⁾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0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주체를 다원화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및 평가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약처예규)에 따라 매년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¹⁰⁾하고 있음.

다. 관계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타당함.
- 다만,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범위 및 교육기관 지정 주체 확대는 관리·감독의 일관성,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10)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

-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권자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될 경우, 지역별 위생교육기관의 교육 수준·운영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하여 관리가 어려워지고 교육의 내실화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식품위생교육 제도
---------------	------------------

○ **(교육종류)**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구 분	교육대상	교육이수 시기	교육시간	행정처분
신규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 신고 이전	4~8시간	시정명령/업무정지7일/15일
정기교육	영업자	매년	3시간	과태료 20만원/40만원/60만원

* 유흥종사자는 매년 2시간 교육 이수(그 외 종사자는 교육의무 없음)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이수

- 집합교육에 따른 영업자불편(교육장소 이동, 교육일자 제한 등) 완화를 위해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과제'로 온라인교육 도입

* (정기교육) '10년부터 운영, (신규교육) '14년부터 운영

- 교육의 실효성을 위하여 '21년부터는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21.1.1. 시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확산으로 시행시기를 유예('22.9.까지)

○ **(교육내용)**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품질관리 등 교육

* 교육기관별 교과목은 매년 식약처에서 승인

○ **(교육비)** 영업자 부담으로 교육기관·업종·교육시간별 상이

<교육대상 업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비>

교육대상 업종(21개)	교육시간(시간)		교육비(원)	
	신규	정기	신규	정기
식품제조업종(식품제조·가공업 등 3개)	6~8	3	35,000	18,000~20,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등 6개), 집단급식소	6	3	25,000~45,000	8,000~35,000
식품운반업, 소분·판매업종 등(11개)	4	3	20,000	20,000

【참고 2】	식품위생교육 기관 현황
---------------	---------------------

- **(지정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동업자조합은 별도 요건 없이 제출서류(동업자조합 입증 서류, 교육계획, 소요예산 등)를 심의 후 지정
 - 교육전문기관은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평가단(내부 2명, 외부 3명)을 구성하여 서류검토·강사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
- * ① 교육대상 업종 관련 법인, ② 회원 명부 제출 및 제출된 회원에 한하여 교육, ③ 회원수 5,000명 이상, ④ 시설기준, 강사요건, 전문강사 3명(상근 1명) 이상 확보 등
- **(교육기관 지정)** 「식품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에 구체적으로 10개 교육기관을 정하고 교육기관별 교육대상을 지정

<교육기관별 교육대상>

교육기관명		교육대상(총 21개)	교육기관 지정년도
①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판매업 등 15개 업종	1987년
동업자 조합	② 대한제과협회	제과점	1993년
	③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1987년
	④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단란주점업	1993년
	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유흥주점업	1993년
	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	1993년
	⑦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2011년
	⑧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2011년
	⑨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2011년
식품위생 교육전문 기관	⑩ 한국외식산업협회	일반음식점 등 3개 업종 (회원내 한함)	2014년